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(제1차 교육위원회) 2017. 6. 9. 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덕환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- 1. 발 의 자 : 충청북도교육감
-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 - O 발의일자 : 2017년 5월 31일
 - O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일

3. 제안이유

○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정(2016.2.3.) 및 동법 시행령 제정 (2017.2.3.)에 따른 조례 개정

4. 주요내용

- 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 : 학교환경정화 → 교육환경보호
- O 기존 위임사항 삭제 및 동 법률에 의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관련 사항 신설
-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에 관한 업무권한 교육장 위임 (안 제5조제33호)
- 교육공무직원 임용에 대한 교육장·학교장 업무권한 위임 (안 제5조제31호가목 및 나목, 제6조제10호)

5. 검토의견

○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'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' 관련 사항 신설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장 및 학교장에 대한 업무권한 위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